

# 댐용수공급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댐용수공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댐용수공급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개발시설 중 댐 및 하굿둑에서 공급하는 물의 사용계약, 요금징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4. 10. 10., 2020. 2. 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댐 및 하굿둑”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이라 합니다) 제24조제4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수공법”이라 합니다) 제2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에 댐사용권이 설정되거나 댐법 제24조제5항과 수공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다목적댐 및 하굿둑을 말합니다. <개정 2018. 6. 8., 2020. 2. 24.>
2. “고객”이란 수자원개발시설 중 댐 및 하굿둑에서 공급하는 물(이하 “댐용수”라 합니다)을 공사와 사용계약에 의하여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이하 “생·공용수”라 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정 2002. 12. 17., 2004. 11. 18., 2005. 10. 10., 2020. 2. 24.>

3. “사용계약량”이란 고객이 신청하여 공사가 승낙하거나 제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일정기간 동안의 댐용수량을 말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댐 및 하굿둑의 건설로 인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물을 댐의 저수지·하류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3조의2(규정의 승인 및 통지)** ① 이 규정은 댐법 제35조제3항과 수공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며,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개정 2014. 10. 10., 2018. 6. 8., 2020. 2. 24.>

② 공사는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통보하며, 요금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은 변경된 규정에 따릅니다. <신설 2002. 12. 17.><개정 2020. 2. 24.>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고객이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인수·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인수·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고객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고객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2. 12. 17., 2020. 2. 24.>

**제4조의2(고객 사업장의 출입 등)** ① 공사는 취수설비 및 수도미터의 검사 또는 수도미터의 검침 및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사업장(토지 또는 건물)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출입시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소속직원이 출입할 때에는 공사의 신분증을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설 2002. 12. 17.>

## 제2장 댐용수의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댐용수의 공급방법)** 댐용수의 공급은 댐법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댐관리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개정 2020. 2. 24.>

**제6조(사용신청)** ① 댐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댐용수 사용신청서에 사용신청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4. 10. 10., 2020. 2. 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환경개선을 위하여 댐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개선용수 사용(변경)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0. 2.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또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2. 12. 17.> <개정 2020. 2. 24.>

**제6조의2(사용계약)** ① 고객이 제6조에 따라 댐용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공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댐용수 사용을 승낙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승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2. 24.>

1. 댐용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댐용수 사용 승낙으로 수도시설 등의 중복투자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 환경개선용수의 사용으로 생·공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설 2020. 2. 24.>

4. 그 밖에 댐용수 공급설비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02. 12. 17., 2020. 2. 24.>

③ 댐용수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④ 공사는 댐용수 사용을 승낙한 때에는 고객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댐용수 사용승낙서를 내어주며 이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송부일자를 미리 전화 등으로 알립니다. <개정 2020. 2. 24.>

⑤ 제4항에 따라 댐용수 사용승낙서를 내어주거나 발송한 날에 고객과 공사간에 사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⑥ 제3항의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댐용수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면 동 사용계약은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종전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계약기간과 조건 등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제6조의3(생·공용수 사용계약량)** ① 제6조의2에 따라 체결한 생·공용수의 사용계약량은 각 연도별로 직전 연도 11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일평균사용량(사용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다만, 신규 사용계약 체결 후 취수개시 연도까지의 사용계약량은 제6조의2에 따라 사용승낙한 양으로 합니다.

1. 1년간 일평균사용량의 100분의 110이 취수시설용량 이내인 경우 : 일평균사용량의 100분의 110(100m<sup>3</sup>이상은 10m<sup>3</sup>미만을 버리고, 100m<sup>3</sup>

미만은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개정 2020. 2. 24.>

2. 1년간 일평균사용량의 100분의 110이 취수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취수시설용량 <개정 2020. 2. 24.>

② 사용계약량과 실제사용량의 차이가 30%이상 4개월간 계속되거나 취수 시설의 증설 등으로 사용계약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까지의 사용계약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까지는 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량의 변경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량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댐용수 사용승낙서를 고객에게 보내야 합니다.

④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용수사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허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설 2002. 12. 17.>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요금감면승인일 이후 매5년마다 제1항에 따라 사용계약량을 결정하되 최근 5년 중 최대사용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 요금감면신청서의 용수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7. 4. 6.>

⑥ 제5항에 따른 사용계약량 결정 후, 실제사용량이 사용계약량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초과하거나 시설증설 등으로 사용계약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제5항 단서의 용수수량 내에서 사용계약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7. 4. 6.>

⑦ 제6항의 사용량이 계약량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3개월간 최대사용월의 110%를 한도로 계약량을 변경하고 기존 계약량 적용기한까지 적용합니다. <신설 2017. 4. 6.>

**제7조(사용계약의 변경)** ① 고객이 댐용수 사용계약을 변경(다만, 제6조의3에

다른 생·공용수 사용계약량의 변경은 제외합니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댐용수 사용변경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희망일 5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 2014. 10. 10., 2020. 2. 24.>

② 제1항의 댐용수 사용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승낙, 사용기간, 승낙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2의 규정을 따릅니다. <개정 2002. 12. 17.>

**제8조(공급제한 및 정지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용수 공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상가뭄 등으로 저수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댐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때
2. 제5조에 따라 「댐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댐 및 하굿둑 저수의 방류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때
3. 제20조의2제1항3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는 경우로서 댐용수의 사용으로 인하여 본류 하천유지유량의 부족 또는 다른 댐용수 고객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한 때 <신설 2006. 5. 1.> <개정 2020. 2. 24.>
4. 효율적인 수자원의 관리 등 공익상 필요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댐용수의 공급제한 또는 정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공사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댐용수 공급을 제한 또는 정지하는 경우 공사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은 이에 따라 댐용수의 취수·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신설 2006. 5. 1.>

**제8조의2(사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댐용수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댐용수 사용해지신청서를 계약해지 희망일 5일전 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4. 10. 10.> <개정 2020. 2. 24.>

② 공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댐용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2. 24.>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취수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용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댐용수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객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설 2002. 12. 17.> <개정 2020. 2. 24.>

### 제3장 취수설비 및 수도미터의 설치·관리

제9조(취수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댐용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취수탑·취수관로 등 취수설비 및 그 부대시설(이하 "취수설비"라 합니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고객은 취수설비의 설치·개조·변경 또는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10조(댐용수 사용계약의 해지) 삭제 <2002. 12. 17.>

제11조(수요자 사업장의 출입 등) 삭제 <2002. 12. 17.>

**제12조(수도미터 및 시간계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고객은 댐용수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공인된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거나 이와 동등하게 표준화된 계량설비(이하 “수도미터”라 합니다)를 취수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수도미터의 설치·개조·수리·검정·교정에 대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및 공사의 「수도설비 및 사업장 운영관리 업무기준」을 따라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수도미터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정을 필한 수도미터로 교체 설치합니다. 다만, 공인기관의 재검정을 받아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정 2020. 2. 24.>

④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검정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구경 350mm 초과 수도미터는 고객의 책임으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교정주기는 2년 이내로 합니다. <신설 2002. 12. 17.> <개정 2020. 2. 24.>

⑤ 초음파 유량계 등 전원을 이용하는 수도미터는 정전시간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시간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미터·시간계의 설치 및 그 유지관리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개정 2020. 2. 24.>

**제13조(수도미터의 봉인 등)** ① 고객은 수도미터의 설치·개조·수리가 완료되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수도미터 검정서류와 설치도면을 첨부하여 공사에 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의 봉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② 공사는 고객의 참석하에 수도미터를 봉인합니다. 다만, 공사의 참석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가 단독으로 봉인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립니다. <개정 2020. 2. 24.>

③ 고객은 수도미터의 봉인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봉인이 파손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수도미터의 고장신고 등)** ① 고객은 수도미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유선으로 우선 신고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수도미터 고장(이상)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확인을 받아 수선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2. 24.>

② 공사는 고객의 수도미터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수도미터의 성능시험결과 수도미터의 오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해당 수도미터의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2. 24.>

1. 구경350mm이하 수도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미터 검정기준」에서 정한 검정공차 <개정 2020. 2. 24.>

2. 구경350mm초과 수도미터는 유속 0.3m/s 이상에서 사용공차  $\pm 2\%$  <개정 2014. 10. 10.>

③ 고객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확인을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도미터 수리 또는 교체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2개월 이내에 수도미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수도미터의 성능시험)** ① 고객은 수도미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사에 신고한 후 공사의 확인을 받아 공인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2.

24.〉

② 공사는 고객이 관리하는 수도미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공인기관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공사가 직접 비교측정하거나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2. 24.〉

③ 고객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확인을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객이 공사의 요구에 따라 성능시험을 한 결과 수도미터의 오차가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검정공차 및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고객의 수도미터를 직접 비교 측정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정 및 교정 유효기간을 초과하거나 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는 고객의 수도미터를 고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2. 12. 17., 2020. 2. 24.〉

**제15조의2(수도미터관리의 특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미터 관리에 관하여 고객과 공사간에 별도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가 수도미터를 관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4. 11. 18.〉 〈개정 2020. 2. 24.〉

## 제4장 생·공용수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16조(용수사용량의 검침)** ① 용수사용량의 검침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수도미터의 교체·수리·요금단가 변경·사용량 변경 등 필요시에는 수시로 검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검침은 공사 직원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객의 참석하에 실시합니다. 다만, 공사의 참석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단독으로 검침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2. 24.>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수시설용량이 2,000m<sup>3</sup>/일 미만인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3개월 단위로 검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검침일에 검침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후기간의 일수비례에 따르거나 유선으로 고객에게 검침량을 확인하여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신설 2020. 2. 24.>

⑤ 원격계측설비를 갖춘 시설의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하에 고객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검침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 2. 24.>

**제17조(사용량의 계산)** 사용량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취수장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1m<sup>3</sup>미만은 사용량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4. 10. 10., 2020. 2. 24.>

1. 당월사용량 = 당월검침물량 - 전월검침물량 - 기득사용물량

다만, 기득사용물량은 댐 및 하굿둑 설치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허가를 득한 물량입니다.

2. 제16조제3항에 의해 3개월 단위로 검침하는 경우

가. 검침하지 않은 달의 사용량 계산

○ 전화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전화로 확인된 물량

○ 전화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직전 검침 월의 일평균사용량 × 해당 월의 일수

나. 검침하는 달의 사용량 계산

○ 당월사용량 = 당월검침물량 - 직전검침물량 - 검침하지 않은 달의 사용량

**제17조의2(사용량의 추산) ①** 수도미터의 고장 등으로 계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 당월사용량 = 당월 수도미터 정상 가동기간의 계량 물량 + 고장 기간의 사용량

1. 제1항의 '고장기간의 사용량'은 다음 각 목 중 가장 타당한 방법을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정 2020. 2. 24.>

가. 고장 직전 1개월의 실적치에 전년 동월추세를 반영하는 방법

○ 고장기간 사용량 = 고장 직전 1개월의 일평균사용량 × 고장일수  
×  $\frac{\text{고장발생월 전년동월 일평균사용량}}{\text{고장발생 직전월의 전년동월 일평균사용량}}$

나. 고장 직전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 고장기간 사용량 = 고장 직전월의 일평균사용량 × 고장일수

다. 고장 직전 3개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 고장기간 사용량 = 고장 직전 3개월의 일평균사용량 × 고장일수

라. 수도미터 교환 후 실적에 의하는 방법

○ 고장기간 사용량 = 교환 후 수도미터에 의한 일평균 사용량 × 고장일수  
다만, 수도미터 사용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개정 2002. 12. 17.>

2. 수도미터가 연속 2회 이상의 요금계산 기간 동안 고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개정 2020. 2. 24.>

가. 2회차 이후의 요금계산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량은 제1호에 따라 고장 직후 처음 적용한 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수도미터가 3개월 이상의 장기고장인 경우에는 고장 이후 3개월이 된 월의 사용량은 가목의 방법으로 계산된 물량에 5%를 가산하여 계산하고, 고장 이후 4개월 이상 된 월의 사용량은 취수시설용량 한도 내에서 3개월이 된 월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사용량에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000분의 12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다만, 제14조 제4항에 따른 수도미터 수리 또는 교체 기간이 종료되는 월까지는 2개월이 된 월로 봅니다.

### 3. 수도미터의 성능시험결과 기기오차가 검정공차 또는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

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도미터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확인을 받은 월 또는 성능시험을 요구한 월부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용수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정정하거나 다음 월분의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 검정시 : 사용량 = 계량된 사용량 ÷ {100% - (검정공차 - 기기오차)}

○ 교정시 : 사용량 = 계량된 사용량 ÷ {100% - (사용공차 - 기기오차)}

나. 성능시험을 위한 수도미터의 분리 등으로 계량을 할 수 없는 기간의 용수사용량은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한 후 제3호 가목에 따라 정정하거나 제1호 라목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4. 신규 사용계약 체결이후 최초 검침일까지 수도미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인 경우

가. 최초 사용월 : 취수시설용량의 85%

나. 2개월차 : 취수시설용량의 90%

다. 3개월차 및 이후 : 해당 월의 직전월 용수사용량에 취수시설용량의

1000분의 12를 가산(다만, 취수시설용량 한도 내) <개정 2020. 2. 24.>

5. 전원을 사용하는 수도미터가 정전 등으로 인하여 정전시간 동안의 계량 기록이 누락된 경우

○ 당월 용수사용량

= 수도미터에 의한 당월 용수사용량 + 정전시간 × {수도미터에 의한 당월 용수사용량 ÷ (당월총시간 - 정전시간)}

다만, 고객이 수도미터 전원의 정전시 취수펌프의 전원도 정전이 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는 해당 정전시간의 용수사용량은 0으로 합니다.

6. 관로의 크기 등 시설용량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작아 수도미터가 측정할 수 있는 적정유량 범위의 하한치에 미달하여 측정이 불가하거나 오차가 과도한 경우에는 수도미터가 측정할 수 있는 적정유량 중 최소 유량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용수사용계획량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사와 고객이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4. 10. 10.>

**제18조(생·공용수 요금단가)** ① 생·공용수의 요금(이하 이장에서는 “요금”이라 합니다)단가는 「댐용수요금산정규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단가로 합니다. <개정 2018. 6. 8.>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생·공용수 요금단가가 변경 승인된 경우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립니다.

**제19조(요금의 계산 등)** ① 요금은 월간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계산합

니다. <개정 2002. 12. 17.>

② 제1항의 요금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개정 2020. 2. 24.>

③ 삭제 <2014. 10. 10.>

**제20조(요금의 고지 및 납부)** ① 공사는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요금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고객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고객이 납기일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공사에 통지하여 재발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납부고지서를 납기일로부터 5일전까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고 별도의 납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2개 이상의 취수시설을 이용하여 댐용수를 취수 사용하는 경우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 동일고객의 시설별 요금을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③에서 이동 및 개정 2014. 10. 10., 2020. 2. 24.>

③ 요금은 공사가 지정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기일이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그 다음영업일로 합니다. <개정 2002. 12. 17., 2014. 10. 10.>

④ 고객은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 의한 사용요금을 공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납기관에서 수납에 따른 송금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요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의2(요금의 감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1. 「소방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댐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경우 : 전액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 제25조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서 생태계보호, 경관개선 등 하천환경개선을 위하여 댐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동일 수계 내에서 분류 밖으로 댐용수가 유출되는 사용의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개정 2020. 2. 24.>

가. 삭제 <2020. 2. 24.>

나. 삭제 <2020. 2. 24.>

4. 그 밖에 공사가 일시적으로 댐용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공사가 정하는 감면을

② 삭제 <2020. 2. 24.>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는 고객은 제6조의2에 따라 공사가 승인한 사용계약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2. 24.>

④ 고객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고 댐용수 취수·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06. 5. 1., 2020. 2. 24.>

**제20조의3(요금적용의 특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강변의 지하대수층을 이용하여 취수하는 물(이하 “강변여과수”라 함)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강변여과수 개발의 장려를 위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강변여과수 대상은 하천의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 50m이상 떨어진 둔치 등에 깊이 20m이상의 취수정을 뚫거나 깊은 우물형식의 집수정을 설치하여 강제적인 양수행위를 통해 지표수를 자연적인 상태로의 지층으로 유입 및 장기간 체류시켜 대수층의 자체 정화 능력을 이용하여 취수하는 물을 말하며, 표류수의 직접취수가 곤란하여 취수원수의 유량확보방안으로 하천바닥에 유공관 등을 매설하여 취수하는 복류수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변여과수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량된 용수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2.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고객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요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2. 24.>  
<신설 2002. 12. 17.>

**제20조의4(댐용수요금의 지원)** ① 공사는 댐용수 수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취수하여 생·공용수로 사용하는 고객에게 댐용수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2. 24.>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월평균 3mg/L <신설 2020. 2. 24.>
2. 총인(T-P) 월평균 0.1mg/L <신설 2020. 2. 24.>

② 제1항에 따른 댐용수요금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연간지원금 = (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월의 댐용수요금 × 10%)의 해당 연도 합산액. 다만, 중복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항목만 적용 <개정 2014. 10. 10., 2020. 2. 24.>

③ 제1항에 따른 댐용수의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취수지점 직상류의 수질측정망 측정자료(이하 “측정망 자료”라 한다)로 판

단합니다. 다만, 해당 측정망 자료가 취수지점의 수질상태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수지점에서 가장 근접한 측정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2. 24.>

④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댐용수요금의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까지 지급합니다. <개정 2014. 10. 10.>

⑤ 고객이 지원금 산정에 해당하는 댐용수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납요금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4. 10. 10.>

<신설 2003. 11. 3.>

**제21조(연체금 및 미납통지)** ①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달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납기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시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2. 납기일 다음 날부터 1개월 경과후 2개월 이내 납부시

: (미납요금 × 2/100) + [미납요금 × 1/100 × (처음 1개월 경과한 연체일수/2개월째 월력일수)] <개정 2017. 4. 6.>

3. 납기일 다음날부터 2개월 경과 후 납부시

: 미납요금 × 3/100 <개정 2014. 10. 10.>

② 공사는 납기일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댐용수요금 미납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개정 2005. 10. 10., 2020. 2. 24.>

**제22조(미납요금 등의 징수)** 고객이 미납된 요금 등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납부의무가 먼저 발생한 월의 요금에 대한 연체금, 미납요금 순으로 납부

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강제징수)**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취수사용을 제한하고 수공법 제29조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부당이득금·가산금)** ① 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수하여 요금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징수하는 이외에 회피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 2. 24.>

②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수한 기간 및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25조(이의 신청)** ① 공사가 고지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사는 고객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개정 2002. 12. 17., 2020. 2. 24.>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요금의 부과액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달 요금에서 그 차액을 가감합니다.

③ 이의신청한 요금 등을 다시 계산한 결과 요금을 과다 수납하였을 때에는 수납일의 익일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시중은행의 해당기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불합니다. <신설 2002. 12. 17.> <개정 2020. 2. 24.>

## 제5장 농업용수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삭제>

**제26조 내지 제29조** 삭제 <2004. 11. 18.>

**제30조(선수금)** ① 공사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1년 이내의 요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금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요금에서 차감합니다. <신설 2014. 10. 10.> <개정 2020. 2. 24.>

## 제6장 보 칙

**제31조(기존 계약과의 관계)** 종전 「댐및하구독물사용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사항과 「댐용수공급규정」에 의하여 댐용수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댐용수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32조(해석)** 이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 6. 8.>

**제33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1991. 11. 30 개정승인)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1993. 8. 24 개정승인)

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1994. 4. 6 개정승인)

이 규정은 1994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1994. 10. 18 개정승인)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1997. 5. 3 개정승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댐용수 사용의 보장】** 공사는 이 규정의 개정 시행일 이전에 수요자가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유수인용허가를 받은 물량에 대하여는 그 허가기간 동안에 한해 댐용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③ **【댐용수 사용승인】** 수요자는 이 규정의 개정 시행일 전까지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해 실제 사용량을 감안하여 댐용수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승인량을 이 규정에 의해 새로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 부 칙(1999. 10. 9 개정승인)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7조,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요금 및 부당이득금·가산금부터 적용합니다.

## 부 칙(2002. 12. 17 개정승인)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연체료에 대한 제4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본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 부 칙(2003. 11. 3 개정승인)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2004. 11. 18 개정승인)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2005. 10. 10 개정승인)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연체금에 대한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 부 칙(2006. 5. 1 개정승인)

①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댐용수의 사용은 하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공급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전까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공용수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 부 칙(2014. 10. 10 개정승인)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2017. 4. 6 개정승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환경개선용수 요금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고객은 이 규정 시행일을 신규 요금감면승인일로 보아 5년간 현재 계약량을 적용합니다.

### 부 칙(2018. 7. 6 개정승인)

이 규정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2020. 2. 24. 개정승인)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 제1호서식】 환경개선용수 요금감면기준(제20조의2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권리·의무승계 신고서(제4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댐용수 사용신청서(제6조 관련)
- 【별지 제2-1호서식】 환경개선용수 사용(변경) 계약 신청서(제6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댐용수 사용승낙서(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댐용수 사용변경신청서(제7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댐용수 사용해지신청서(제8조의2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수도미터 고장(이상) 신고서(제14조, 제15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별지 제8호서식】 댐용수 사용량 검침기록표(제16조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요금 감면 신청서(제20조의3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댐용수요금 미납통지서(제21조 관련)





환경개선용수 요금감면기준 (제20조의2 관련)

-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전액 면제
-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0%~75% 면제
-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판단
  - 댐 내 저수구역에서 취수한 후 댐 하류로 방류하여 댐의 발전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홍수기 수문방류를 제외하고는 다목적댐에서의 방류는 발전을 하면서 실시하므로 저수구역 내 취수는 직접적인 발전 손실을 초래
-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감면을 산정
  -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50% 감면을 적용하되, 환경개선용수 신청 고객이 댐 관할지역 소재 지자체인 경우 감면을 차등 적용
    - 환경개선 용도로 댐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댐법 제43조의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해당되고,
    - 환경개선용수 사용물량이 10천 $m^3$ /일 이하일 경우에는 75% 면제, 10천 $m^3$ /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 면제
  - \* 감면율(75%) 적용을 위한 월별 물량은 (10천 $m^3$  × 해당 월의 일수)로 산정

##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댐용수공급규정」 제4조에 따라 고객의 권리·의무승계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승계인(상속인, 양수인, 합병법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2. 피승계인(피상속인, 양도인, 피합병법인)**

법인명(성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주소 (전화: )

**3. 취수지점**

**4. 권리·의무 내용**

**5. 승계사유**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 양수인, 합병법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피상속인, 양도인, 피합병법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 ○ 귀하**

※ 구비서류 :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1. 환경개선용수 사용(변경)계약 신청서 및 승낙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공급규정」을 따르며, 계약기간 중 「댐용수공급규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댐용수공급규정」을 따릅니다.
2. 환경개선용수 사용은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 등에 대한 환경개선 또는 생태환경 조성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3. 「댐용수공급규정」 제20조의2의 제1항 제3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하천법」 제25조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서 생태계 보호, 경관개선 등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 동일 수계 내에서 본류 밖으로 댐용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객의 책임하에 취수량 및 회귀수량 측정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환경개선용수는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한시적 공급이며, 생·공용수의 여유 물량에 한정하여 공급됩니다.
5. 생·공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 공사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제한, 정지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따른 요금 감면,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공사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환경개선용수 사용(변경) 계약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계약신청 유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댐용수 사용승낙서

신규	
변경	

「댐용수공급규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댐용수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 1. 고 객 주소 :  
     성명 :                      전화 :
  
- 2. 하 천 명 :
  
- 3. 취수위치 :
  
- 4. 사용용도 :
  
- 5. 사용기간 :
  
- 6. 사용계약량 :                      m<sup>3</sup>/일(당초:                      m<sup>3</sup>/일)

                  년      월      일

한국수자원공사      ○○ (인)



댐용수 사용해지신청서

「댐용수공급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댐용수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하 천 명	
취수위치	
해지희망일	년      월      일
신청사유	

년      월      일

고 객 주소 :

전화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 ○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개정 2014. 10. 10., 2020. 2. 24.>

수도미터 고장(이상) 신고서

취 수 지 점

고 장 개 요

조치(수리)계획

위와 같이 수도미터 고장(또는 이상)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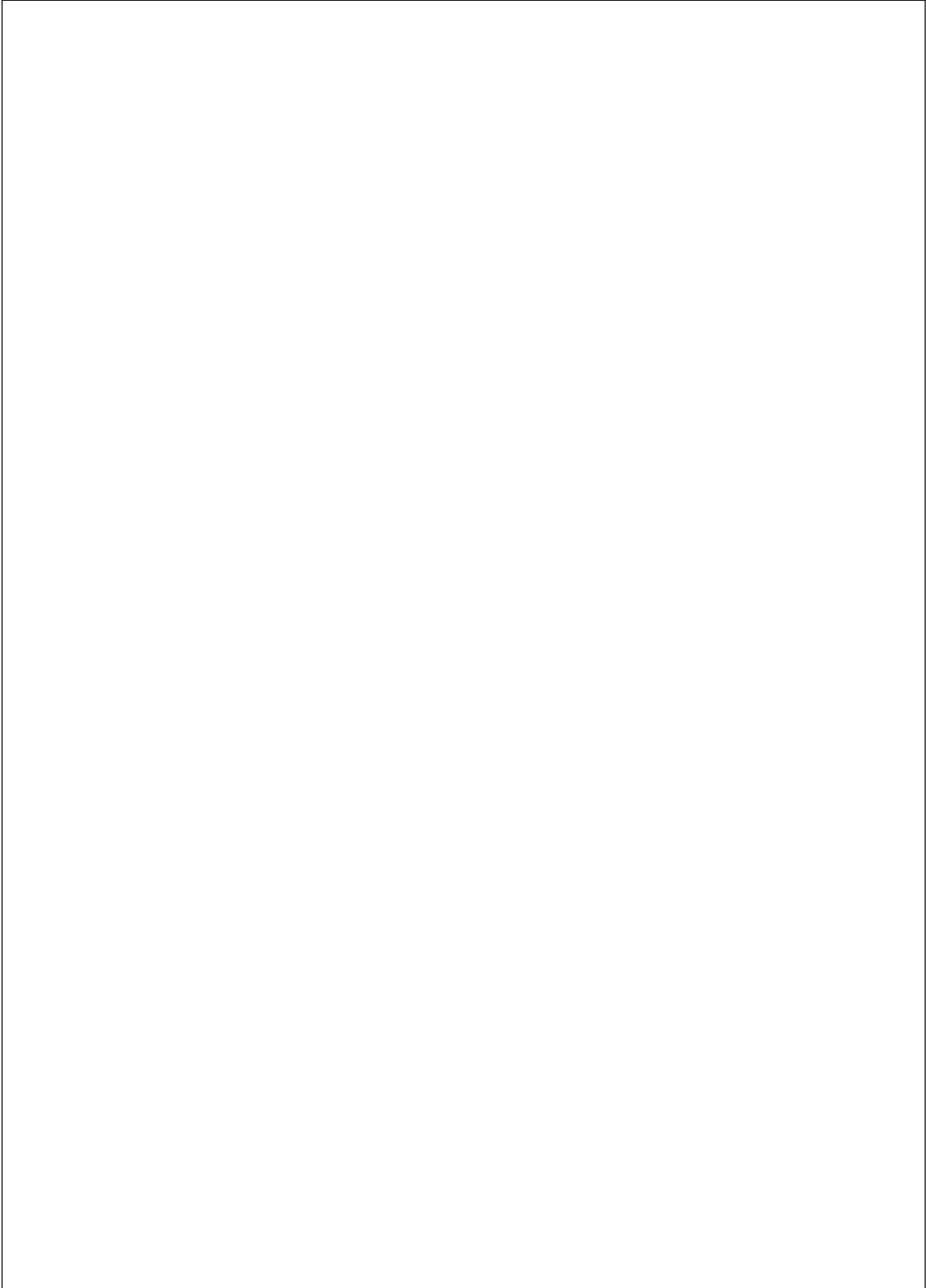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한국수자원공사 ○○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4. 11. 18.>



## 댐용수 사용량 검침기록표

고 객 명 :

취수위치 :

취수시설용량 :  $m^3/일$

(기득사용물량) :  $m^3/일$

수도미터 종별 :                      수도미터 설치일 :

검침 연 월일	일 계약 량 ( $m^3$ )	월 계약 량 ( $m^3$ )	전회 지침	금회 지침	전회 시간	전회 시간계 지침	산출 내역	금회 사용량 ( $m^3$ )	누계 사용량 ( $m^3$ )	검 침 자	참 석 자
					금회 시간	금회 시간계 지침					

## 요금 감면신청서

「댐용수공급규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1. 취수위치 :
2. 사용용도 :
3. 취수시설용량 :
4. 사용계약량 : (용수수량 산출량 : )

년 월 일

고객 주소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 귀하

<첨부 서류>

- 가. 시설의 위치, 시설용량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 나. 설계도, 평면도, 취수정 단면도, 정수처리공정도
- 다. 그 밖에 취수정 공당 개발량, 대수층 체류시간, 취수정간 및 하천과의 이격거리, 수질평가, 지하수 영향 등을 알 수 있는 관련근거 서류

## 댐용수요금 미납통지서

발 행 번 호 :  
주 소 :  
성명(법인명) :

구분		월(년)분	월(년)분	월(년)분	계
요금	공급가액	원	원	원	원
	부가가치세	원	원	원	원
	소 계	원	원	원	원
연체금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원
납기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연체금은 20 년 월 일까지 「댐용수공급규정」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므로 실제 납부일에 따라 변경 됩니다.

위와 같이 20 년 월(년)분 댐용수요금이 미납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납기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수자원공사 ○○ (인)**

\* 참고사항 :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취수 사용을 제한하고 강제징수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